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단1388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

피고1. B

2. C

피고 1 보조참가인C

피고 2 및 피고 1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종식

변론 종결2022. 9. 16.

판결 선고2022. 12. 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22.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2020. 7. 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31. 접수 제1723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6. 7. 5. 원고에게 액면금액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6. 10. 5.,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모두 안양시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58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발행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2. 8.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B이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이 100,000,000원인 압류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1400 사건, 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2020. 6.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10. 접수 제13154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에게 2020.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2020. 7. 31. 접수 제1723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어음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약속어음금 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인데,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만기(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0. 6.로부터 3년(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참조)이 경과한 2021. 9. 29.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 원고의 재항변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명령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16. 10. 6.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 2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8. 이 사건 압류명령을 받았고, 달리 그러한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8. 1. 25. 중단되었고, 그 중단사유는 종료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¹⁾.

2) 이에 대해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압류명령의 피압류채권은 'F 지상 일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형태로 압류를 하였으나 피고 B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무효라고 주장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명령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압류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채권의 특성상 재건축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등기의 대상목적물이 특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실제로 이 사건 압류명령은 피고 B의 소유권보존등기 일자로부터 2년 4개월 정도 이전에 발령되었다), ② 이 사건 압류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조합원인 피고 B이 재건축조합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중랑구 F' 지상 일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표현되어 비록 구체적인 분양 대상물이 동호수 형태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합원인 피고 B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래에 분양받게 될 특정 건축물이 그 대상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기재된 '서울 중랑구 F' 토지는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의 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아니라 피고 B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통상적인 재건축사업의 내용에 의할 때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정도로 피압류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압류 대상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압류명령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압류채권 자체가 부존재하여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송달된 즉시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여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데,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명령의 피압류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어음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 1) 원고는,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과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3) 위 거시 증거 및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9. 10. 21.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7억 원을 상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 1)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 3)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가가 당시 인근 아파트의

거래사례보다 특별히 낮게 결정되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는 전체적인 아파트 매매시세가 상승하던 시점이었고, 이로 인해 피고 C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단기간으로 설정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체 매매대금 93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 C이 승계하는 것으로 같음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 C이 종전에 보유하던 아파트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전후 시점에 매도하면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국세 관련 압류 등기가 취하 및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 C이 지급한 계약금을 재원으로 하였던 점, ⑤ 피고 C은 2021. 12. 3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500,000,000원을 반환한 후 2022. 1. 21.부터 임차인이 퇴거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수익자인 피고 C의 선의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배진호

별지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